

##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( 약칭: 화물자동차법 )

[시행 2025. 11. 1.] [법률 제21025호, 2025. 8. 14., 일부개정]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제2조(정의)

###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

제3조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)

제4조(결격사유)

제5조(운임 및 요금 등)

제5조의2

제5조의3

제5조의4

제5조의5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)

제5조의5

제5조의6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)

제5조의6

제5조의7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)

제5조의7

제5조의8

제5조의9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)

제5조의10(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)

제5조의11(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)

제5조의12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)

제5조의13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)

제5조의14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)

제5조의15(운송비용 등 조사)

제6조(운송약관)

제7조(운송사업자의 책임)

제8조(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)

제9조(결격사유)

제9조의2(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)

제10조(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)

제10조의2(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 · 관리)

제1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)

제11조의2(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)

제11조의3

제12조(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)

제12조의2(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)

제13조(개선명령)

제14조(업무개시 명령)

제15조

제15조의2

제16조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)

제17조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)